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1980

제출년월일 : 2010. 8. 16.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안산시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학·대학원 등에 학자금을 지원하고자 제정한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위탁교육 지원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별도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동 조례 폐지”

□ 폐지조례안 : 별첨

□ 신구대조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8조

□ 관계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 2010. 3. 17. ~ 3. 27.(1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조례(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원에 관한조례)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 (위탁교육훈련<개정 2007.1.3>)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3>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도 지사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2008.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중인 소속 공무원이 당해 교육훈련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5.3.24, 2007.1.3>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5.3.24>

⑥ 삭제 <2007.1.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8조(위탁교육훈련계획)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국내외 위탁교육 훈련계획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는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3. 훈련의 종류별·분야별 훈련인원
4.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선발방법 및 절차

5. 훈련이수 후의 보직계획
 6. 훈련비의 내역 및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훈련비를 부담하는 등 국내 위탁교육훈련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7.3]

□ 현행조례

안산시 지방공무원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995.01.17 조례 제0595호
(일부개정) 1995.12.04 조례 제 658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안산시소속 공무원들 중에서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학자금 지원대상자 선발과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안산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을 지원한다.

1. 대학원·대학교·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자
2.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자

제3조(학자금 지원)학자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연1회 7월말에 지원한다.

1. 대학원 : 100만원
2. 대학교 : 100만원
3. 전문대학 : 70만원
4. 한국방송통신대학 : 20만원

제4조(신청)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 본청의 실·과장,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동장을 경유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지원신청서
2. 학자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3. 재학증명서(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는 제외)
4. 졸업증명서(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에 한함)

제5조(지원중단)다음 각호의 ~ 3호에 해당할 때에는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4호에 해당할 때에는 기지급된 학자금을 전액 회수한다.

1.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거나 기타 사정으로 휴학한 경우
2. 재학중 비위등으로 징계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3. 재학중 학점 미달등의 사유로 유급되는 등 시장이 학자금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학자금을 지원받는 자가 당해년도에 자의로 퇴직할 때

제6조(명부의 관리)총무과장은 학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그 명부를 작성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2.04)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96년도 방송통신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96년도까지 지급한다.